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05호 2020. 12. 24.(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426호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427호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5
- 사천시 고시 제429호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 8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578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9
- 사천시 공고 제1590호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2
- 사천시 공고 제1597호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천시 고시 제2020-426호

##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9-289(2019.12.26.)호로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된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5,95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변경)
  - 가. 시행계획 변경 내용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5,950	5,950	
기 초 생 활 기 반 확 충			4,323	4,195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센터신축 657.4㎡	3,963	3,922	
	경로당 리모델링	리모델링 89㎡	150	142	
	사계절 다목적구장 조성	다목적구장 조성 273㎡	210	131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지역경관개선			760	774	
	수변산책로 정비	산책로 조성 293㎡	760	774	
지역역량강화			350	372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1식	145	176	
	주민 복지 프로그램	1식	102	104	
	홍보마케팅/컨설팅	1식	43	-	
	마을경영지원	1식	60	92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517	609	

## 나. 변경 사유

사업분야	세부사업	변경사유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수밀성을 고려한 자재 변경, 각 실 방음을 위한 흡음제 반영,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식당시설을 북 카페시설로의 변경 등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및 집행잔액 반영
	경로당 리모델링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주민의견 및 집행잔액 반영
	사계절 다목적구장	포장공법 변경 등 주민의견 및 집행잔액 반영
지역경관개 선	수변산책로 정비	현장여건에 따른 데크 물량조정 및 집행잔액 반영
지역역량강 화	교육 및 컨설팅 등	북 카페 활성화교육 등 실 사업비 조정 및 사무장활동비 추가 반영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농어촌정비법 요율 적용 및 실 정산액 반영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6.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7.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7년 1월 ~ 2020년 12월 31일

■ 변 경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31일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b>합 계</b>					<b>4,304</b>							
1)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2,105							
1	사남	화전	1586-1	전	245	122	사천시					
2	〃	〃	1586-2	답	499	499	사천시					
3	〃	〃	1586-3	전	69	69	사천시					
4	〃	〃	1589-1	답	695	194	사천시					
5	〃	〃	1589-6	답	1,055	381	사천시					
6	〃	〃	1589-9	답	1,042	207	사천시					
7	〃	〃	1589-11	전	20	20	사천시					
8	〃	〃	1589-13	답	63	61	사천시					
9	〃	〃	1589-19	답	327	13	사천시					
10	〃	〃	1589-20	답	274	125	사천시					
11	〃	〃	1589-21	답	40	40	사천시					
12	〃	〃	1589-22	답	220	220	사천시					
13	〃	〃	1589-23	답	132	132	사천시					
14	〃	〃	1589-48	답	31	19	사천시					
15	〃	〃	1606-71	도	762	3	국(건설부)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사남중심지 활성화센터 조성					2,105							
1	사남	죽천	47-1	체	696.4	691	사천시					
2	〃	〃	47-2	대	303.1	6	사천시					
3	〃	〃	47-3	공	485.6	13	사천시					
4	〃	〃	49	도	2,896.7	3	사천시					
3) 수변산책로 정비					1,397							
1	사남	화전	1589-2	천	528	165	사천시					
	〃	〃	1589-5	답	252	1	사천시					
2	〃	〃	1589-6	답	1,055	674	사천시					
3	〃	〃	1589-19	답	327	234	사천시					
6	〃	〃	1589-38	도	13	1	사천시					
	〃	〃	1589-48	답	31	12	사천시					
7	〃	〃	1590	천	3,160	72	경상남도					
8	〃	〃	1592-2	천	2,654	80	국(국토 부)					
	〃	〃	1606-36	천	281	55	국(건설 부)					
	〃	〃	1606-71	도	762	103	국(건설 부)					
4) 경로당 리모델링					89							
1	사남	화전	1271	대	1,299	89	병든 향토회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사천시 고시 제2020-427호

##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8-102(2018. 6. 7.)호로 시행계획 수립 고시된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59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24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곤명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솔사, 다자연 녹차 등 자원을 활용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4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합 계		5,400	
	소 계		3,651	
기초생활 기반시설	다솔문화센터조성	부지 2,646㎡ (건축 연면적 303㎡)	1,720	
	녹차공원조성	A=436㎡	166	
	공동생활 홈조성	건축 연면적 103㎡	475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 업 분 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기초생활 기반시설	배후마을 연결도로	L=260m	384	
	김동리 산책로정비	L=785m	906	
지역경관 개 선	소 계		909	
	중심 가로경관정비	L=540m	231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L=360m	453	
	생태하천 정비	1식	225	
지역역량 강 화	소 계		840	
	교육 및 견학	1식	373	
	컨설팅	1식	104	
	운영지원	1식	39	
	부대비용(기본계획 수립 등)	1식	324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6.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6년 ~ 2020년 12월

■ 변 경 : 2016년 ~ 2021년 12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 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녹차공원 조성													
1	곤명	봉계	290	290	대	170	170	사천시					
2	곤명	봉계	291	291	대	143	143	사천시					
3	곤명	봉계	산45-1	산45-6	임	4,432	88	국토교통부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면	리	이동전	이동후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2) 공동생활 홈조성													
1	곤 명	봉계	147	147-1	전	1,018	320	사천시					
3) 김동리 산책로 정비													
1	곤 명	봉계	910-1		천	553	142	경상남도					
4) 중심 가로경관정비													
1	곤 명	봉계	206-3	206-3	답	3	3	사천시					
5) 봉명로 가로경관조성													
1	곤 명	봉계	181-23		도	562	454	김*원	진주시 내 동면 독산리 **				
2	곤 명	봉계	216	216-3	대	340	4	사천시					
6) 다솔문화센터 조성													
1	곤 명	봉계	205-1	205-6	철	4,284	2,646	사천시					

8. 관계 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천시 고시 제2020-429호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사천시 고시 제2015-105호(2015.07.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하고 사천시 고시 제2018-32호(2018.02.14.), 사천시 고시 제2019-210호(2019.09.11.), 사천시 고시 제2020-365호(2020.11.12.)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한 사천 대진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합니다.

2020. 12. 24.

## 사 천 시 장

###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부 경남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시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술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나. 면 적 : 247,913m<sup>2</sup>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5. 07. 30. ~ 2022. 12. 31.

나. 개발방법 : 실수요자개발방식

## 5.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태양력 발전업(D35114) : 건축물 지붕 및 주차장 등에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가. 주 소(변경)

- (기정)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37, 미라벨오피스텔 101호

- (변경) 수탁자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4(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위탁자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37, 미라벨오피스텔 101호

나.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대진산업단지(주)외 3개사 대표 백 영 춘

[(주)부성, (주)해원, 경민산업(주)]

- (변경) 수탁자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이사 조 혁 중

위탁자 : 대진산업단지(주)외 3개사 대표 백 영 춘

[(주)부성, (주)해원, 경민산업(주)]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가. 지목별 현황

구 분	합 계	답	구거	도로	임야	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필지수	30	6	1	3	16	2	1	1
면 적(m <sup>2</sup> )	247,913	11,598	183	16,233	216,257	1,412	1,847	383
구성비(%)	100.0	4.7	0.1	6.5	87.2	0.6	0.7	0.2

### 나. 소유자별 현황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소계	산림청	농림축산 식품부	기 획 재정부	사천시	
필지수	30	2	-	1	1	3	25
면적(m <sup>2</sup> )	247,913	1,368	-	183	1,185	16,233	230,312
구성비(%)	100.0	0.6	-	0.1	0.5	6.5	92.9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7,913	100.0	
산업시설공간	149,610	60.3	
BL1	27,625	11.1	
BL2	30,345	12.1	
BL3	55,940	22.6	
BL4	35,700	14.4	
지원시설공간	11,770	4.7	
지원시설1	5,050	2.0	
지원시설2	6,720	2.7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공공시설공간	86,533	35.0	
도로(중1-5호선)	28,693	11.6	도로:12.9% (증 0.2%)
도로(중2-18호선)	3,250	1.3	
주차장⑩	1,960	0.8	주차장:2.1% (증 0.1%)
주차장⑪	3,085	1.3	
배수지⑤	1,120	0.5	
저류지③	2,815	1.1	
오수처리시설⑥	255	0.1	가압장
소공원⑱	9,415	3.8	녹지:18.3% (감 0.8%)
소공원⑳	780	0.3	
완충녹지㉓	9,390	3.8	
완충녹지㉔	25,770	10.4	

## 나. 기반시설계획

### 1) 도로계획

####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중로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국지 도로	949	소로2-34	소로2-9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5	대진리 산70-4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2) 주차장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1,960	-	1,960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기정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3,085	-	3,085	"	

## 3) 공원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대진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9,415	-	9,41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20	대진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780	-	780	"	

## 4) 녹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 일원	9,390	-	9,390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25,770	-	25,770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5) 상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1,120	-	1,12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 ◎ 용수량

구분	용수수량(m <sup>3</sup> /일)	비고
계	114.1	
생활용수	114.1	
공업용수	-	

## 6) 하수도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 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255	-	25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펌프장

### ◎ 오 · 폐수량

구분	오 · 폐수량(m <sup>3</sup> /일)	비고
계	67.46	
생활오수	67.46	
산업폐수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7) 우수지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우수지	저류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2,815	-	2,815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 8) 에너지공급계획

### ◎ 전 력

전력소요예상량(MWh/m <sup>2</sup> ·년)	비고
37,604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된 결과반영

## 9. 재원조달계획

### 가. 사업비 추정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52,084		
용 지 비	소계	7,846	
	토지매입비	5,626	
	지장물보상비	2,220	축사, 주택2채, 묘지(34기) 등
조 성 비	소계	33,338	
	공사비	21,032	부지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제경비	12,306	
자본비용	소계	7,200	
	금융이자	7,200	48개월
기타비용	3,700	각종부담금, 운영 등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나. 연차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약 521억원은 산업단지 승인전 용지보상비 및 조사설계비 등이 소요되며, 이후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별로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2년
합계	52,084	14,946	37,138
용지비	7,846	7,846	-
조성비	33,338	2,400	30,938
각종부담금	7,200	3,600	3,600
간접비	3,700	1,100	2,600

## 다.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약 521억원 중 교보자산신탁(주) 170억원, 시공사 책임준공 (약 351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임

구 분	합 계(백만원)	비고
합 계	52,084	
금융기관[교보자산신탁(주)]	17,000	용지비, 각종부담금 등
시공사[(에스케이건설(주))]	35,084	조성비 및 간접비(책임준공)

## 라. 분양계획

-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전체 사업부지면적은 247,913m<sup>2</sup>로 이중 149,610m<sup>2</sup>(60.3%)의 산업시설용지를 대진산업단지(주)의 3개사에서 100% 실사용할 계획으로 별도의 분양계획은 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불입"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 11.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분	업종	면적(m <sup>2</sup>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49,610	-	149,610	100.0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55,940	-	55,940	37.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625	-	27,625	18.5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6,045	-	66,045	44.1

※ 공동업종 : 태양력 발전업(D35114) - 건축물 지붕 및 주차장 등에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함

##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가. 토 지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총 계	247,913	100.0	-
산업시설공간	149,610	60.3	사업시행자에 귀속
지원시설공간	11,770	4.7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5,045	2.1	
주차장	5,045	2.1	사업시행자에 귀속
공공시설공간	81,488	32.9	
도로	31,943	12.9	사천시에 귀속
배수지	1,120	0.5	사천시에 귀속
저류지	2,815	1.1	사천시에 귀속
오수처리시설	255	0.1	사천시에 귀속
공원	10,915	4.1	사천시에 귀속
완충녹지	35,160	14.2	사천시에 귀속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나. 시설물

구 분	규격	수량	단위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로	중로1-5	B=20.0	949	m	사천시 귀속	
	중로2-18	B=15.0	199	m	“	
우수	L형측구	B=500	3,145	m	“	
	우수관	D300~D1,200	2,537.5	m	“	
	우수받이	400×500×750	150	개소	“	
	집수정	700×700×1,000	24	개소	“	
	U형수로	400C	1,277	m	“	
		600C	522	m	“	
		800B	405	m	“	
	우수맨홀	1호	10	개소	“	
		2호	17	개소	“	
	저류지		1	개소	“	
비점오염저감시설		2	개소	“		
오수	오수관	D250~D300	675	m	“	
	오수관(압송관)	D150	696	m	“	
	오수받이	410×510×940	5	개소	“	
	오수맨홀	1호	17	개소	“	
상수	상수도관	D30~D75	2,173	m	“	부지의 포함
	제수변	D80	6	기	“	
	지상식소화전	D100	2	개소	“	
	가압장		1	개소	“	
	배수지		1	식	“	
구조물	전석쌓기	H=0.6~4.0m	0	m	“	
	조립식PC암거	1.5×1.5	66	m	“	
	조립식PC암거	2.0×1.5	72	m	“	
	L형옹벽	H=1.0~6.0m	797.5	m	“	
식생보강토옹벽	H=0.5~4.5m	285.3	m	“		
포장	아스콘포장	T=50cm	18,030	m <sup>2</sup>	“	
	보도블럭	T=6cm	4,215	m <sup>2</sup>	“	
	잔디블럭	996×996×150	3,602	m <sup>2</sup>	“	
	도로경계석	150×150×1,000	3,648.5	m	“	
가로수	이팝나무	H3.5×R12	241	주	“	
공원	소공원	-	2	개소	“	
교통 안전 시설	방법CCTV	-	2	개소	“	
	교통표지판	주의,규제	27	EA	“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공	507	m <sup>2</sup>	“	
	차선도색	실선,파선	812	m <sup>2</sup>	“	
	도로표지병		433	EA	“	
	도로반사경	D1,000	5	EA	“	
전기	가로등	H=8m	54	본	“	
	교통신호기	점멸등	1.0	개소	“	
	횡단보도유도등	횡단보도	5.0	개소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7,913	-	247,913	100.0	
일반공업지역	247,913	-	247,913	100.0	

###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1	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7,913	-	247,913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가) 도로(변경없음)

##### ① 총괄표

(단위 : 개, m, m<sup>2</sup>)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중로	2	1,148	23,048	1	949	19,798	1	199	3,250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②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국지 도로	949	소로2-34	소로2-90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199	중로15	대진리 산70-4	일반 도로	-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 (나) 주차장(변경없음)

####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 일원	1,960	-	1,960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기정	11	주차장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 일원	3,085	-	3,085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가) 공원(변경없음)

####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대진공원1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 일원	9,415	-	9,415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기정	20	대진공원2	소공원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 일원	780	-	780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나) 녹지(변경없음)

###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 일원	9,390	-	9,390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 일원	25,770	-	25,770	"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가)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 일원	1,120	-	1,120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가) 우수지(변경없음)

####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3	우수지	저류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 일원	2,815	-	2,815	사천시고시 제2015-105 호 (2015.7.30.)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5)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①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처리 시설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 일원	255	-	255	사천시고시 제2015-105호 (2015.7.30.)	펌프장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sup>2</sup> )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계		247,913	-	-	247,913	
-	I	191,805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149,610	산업시설용지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3번지 일원	1,960	주차장10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4번지 일원	9,415	소공원19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25,770	완충녹지24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5,050	지원시설용지1
-	II	24,165	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4번지 일원	3,085	주차장11
-			2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255	오수처리시설6
-			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6,720	지원시설용지2
-			4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5번지 일원	2,815	유수지3
-			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5-5번지 일원	1,120	배수지5
-			6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12번지 일원	9,390	완충녹지23
-			7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780	소공원20
-	-	31,943	-	-	31,943	도로 (2개노선)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li> <li>-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li> </ul> </li> <li>•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2m(남측부 5m 녹지대로부터)
I-5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0-8번지 일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li> <li>•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3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1-8번지 일원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3] 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li> <li>•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염방시설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법규에 의해 건축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음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가) 소공원1 (변경없음)

####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9,415.0	-	9,415.0	
기정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0-1	317.8	-	317.8	
기정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70-1	914.0	-	914.0	
기정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0-1	8,183.2	-	8,183.2	

####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9,415.0	-	-	
기정	도로	317.8	-	-	
기정	휴양시설	914.0	-	-	
기정	녹지	8,183.2	-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sup>2</sup> )	위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9,415	-	-	-	-	
소 계			317.8	-	-	-	-	
도로	1-1	보행로1	87.6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1-2	보행로2	80.5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3	보행로3	23.4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4	보행로4	41.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1-5	보행로5	85.3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소 계			914.0	-	-	-	-	
휴양 시설	2-1	휴게시설1	600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2-2	휴게시설2	100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2-3	휴게시설3	214	곤양면 대진리 산70-3	-	-	-	
녹지	3	녹지	8,183.2	곤양면 대진리 산70-1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나) 소공원2 (변경없음)

### (1) 부지총괄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80.0	-	780.0	
기정	도로	곤양면 대진리 산71-2	122.2	-	122.2	
기정	휴양시설	곤양면 대진리 산1-8	27.6	-	27.6	
기정	녹지	곤양면 대진리 산71-2	630.2	-	630.2	

### (2) 시설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780.0	-	-	
기정	도로	122.2	-	-	
기정	휴양시설	27.6	-	-	
기정	녹지	630.2	-	-	

### (3) 일반시설별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면적(m <sup>2</sup> )	위치	시설규모(m <sup>2</sup> )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합계			780.0	-	-	-	-	
도로	소 계		122.2	-	-	-	-	
	1-1	보행로1	122.2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휴양 시설	소 계		657.8	-	-	-	-	
	2-1	휴게시설 1	27.6	곤양면 대진리 1-8	-	-	-	
녹지	3	녹지	630.2	곤양면 대진리 산71-2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사천대진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되는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대진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4장 기타사항, 제5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사천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4. “지정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8.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0.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 번호	규 제 내 용		비 고
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
건폐율	최저층수	70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제9조 (담장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대지내 담장은 경관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과형 담장 또는 수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상 불합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 제11조 (주차장)** ①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장 입지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 ② 산업시설용지 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 ③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3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 번호	규 제 내 용		비 고
I-5, II-3	지정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의한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제14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300	5층
건폐율	최저층수	70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로 한다.
- ③ 용적률은 300%이하를 적용한다.
-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16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li> </ul>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사천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장 기타사항

**제20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 등에 따른다.

**제21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식재)** 개별공장 입지시 건물이 전면 또는 도로변으로 5% 이상의 녹지를 설치토록 권장한다.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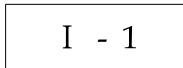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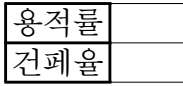

**제23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별표 1: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도면표시 방법**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규 제 사 항	도면표시 방법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획지번호		가구번호 : 로마숫자 획지번호 : 아라비아 숫자
건축물의 층수		표시 우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저층수, 우측상단은 최고층수를 표시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표시 좌측하단에 아라비아숫자는 최대 건폐율, 좌측상단은 최대용적률을 표시
건축한계선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 (변경없음)

번호	좌 표		번호	좌 표	
	X	Y		X	Y
1	172,673.6130	108,193.7700	60	171,957.7240	108,950.2380
2	172,645.3230	108,191.6250	61	171,957.5480	108,955.2790
3	172,638.6130	108,172.2570	62	171,985.4210	108,961.2880
4	172,638.5360	108,163.1140	63	172,003.1400	108,959.8870
5	172,636.6030	108,161.9580	64	172,017.7470	108,952.6970
6	172,634.2180	108,160.5330	65	172,036.4350	108,938.7560
7	172,625.0660	108,157.2100	66	172,092.0660	108,943.4000
8	172,624.6510	108,158.7140	67	172,108.4240	108,938.1990
9	172,621.1660	108,158.0510	68	172,138.1680	108,923.2640
10	172,611.7491	108,198.3124	69	172,152.7410	108,921.1370
11	172,585.5860	108,228.1690	70	172,151.8320	108,916.8060
12	172,567.3760	108,238.5460	71	172,158.7990	108,919.4090
13	172,559.7840	108,258.3240	72	172,162.3850	108,923.1610
14	172,476.9467	108,335.7783	73	172,166.7630	108,923.7910
15	172,415.5700	108,261.2570	74	172,169.4700	108,924.1810
16	172,376.4920	108,268.2250	75	172,181.2310	108,925.8730
17	172,336.2060	108,291.9750	76	172,181.8660	108,917.1160
18	172,336.0370	108,292.0750	77	172,188.4140	108,904.1000
19	172,320.0670	108,306.2280	78	172,192.1960	108,897.7530
20	172,320.0666	108,306.2283	79	172,197.4450	108,888.9440
21	172,319.8450	108,306.1880	80	172,198.0650	108,889.2560
22	172,312.5200	108,304.8530	81	172,203.5510	108,892.0120
23	172,308.3500	108,321.8990	82	172,206.1360	108,893.2760
24	172,303.1640	108,319.5820	83	172,212.3300	108,894.3370
25	172,297.7610	108,336.4200	84	172,225.2090	108,891.1380
26	172,294.9510	108,336.8510	85	172,246.1560	108,877.6800
27	172,291.9290	108,343.8580	86	172,247.5560	108,888.3290
28	172,293.3740	108,344.8180	87	172,244.6410	108,891.9040
29	172,277.3600	108,367.1130	88	172,245.7890	108,898.9130
30	172,269.6580	108,377.8360	89	172,265.2640	108,895.6300
31	172,270.1040	108,378.9480	90	172,283.8840	108,892.4910
32	172,253.2180	108,397.2960	91	172,303.8800	108,888.4590
33	172,240.9480	108,404.6840	92	172,323.8930	108,884.4710
34	172,222.8860	108,428.8540	93	172,342.0160	108,875.9690
35	172,233.7610	108,435.2510	94	172,359.8570	108,866.7960
36	172,224.8480	108,444.5270	95	172,375.1370	108,855.2460
37	172,221.2390	108,458.7090	96	172,394.2570	108,839.9590
38	172,202.5610	108,474.0690	97	172,411.1060	108,822.1770
39	172,189.7450	108,480.7310	98	172,421.1700	108,809.4750
40	172,185.5080	108,497.5620	99	172,426.2200	108,803.1010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번호	좌 표		번호	좌 표	
	X	Y		X	Y
41	172,153.7940	108,531.4770	100	172,440.5380	108,783.8400
42	172,135.1900	108,554.0560	101	172,454.6890	108,764.8700
43	172,105.2260	108,604.3860	102	172,458.8000	108,758.3270
44	172,089.7320	108,618.2950	103	172,460.0340	108,756.3630
45	172,090.7840	108,626.3530	104	172,455.4600	108,751.4610
46	172,084.0520	108,640.0550	105	172,454.0480	108,749.9480
47	172,082.9170	108,654.9500	106	172,441.5870	108,736.5940
48	172,071.7930	108,684.0620	107	172,444.8460	108,731.0800
49	172,058.4840	108,705.4810	108	172,454.2820	108,715.1140
50	172,066.0230	108,739.1150	109	172,536.5050	108,575.9980
51	172,054.2130	108,754.9150	110	172,542.1500	108,553.0940
52	172,056.5990	108,778.5710	111	172,569.3800	108,505.9220
53	172,047.2000	108,795.7320	112	172,562.9760	108,475.5410
54	172,041.1320	108,812.4560	113	172,566.8880	108,467.8460
55	172,028.8670	108,856.0660	114	172,591.5700	108,452.4000
56	172,027.8340	108,876.2640	115	172,632.5190	108,372.2620
57	172,009.4630	108,891.7080	116	172,646.0600	108,331.8840
58	171,986.8500	108,919.4230	117	172,648.4560	108,272.9180
59	171,973.0400	108,939.5960	118	172,671.3130	108,245.2610

##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사천시청(산업입지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공 부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30필지		합계		187,792	187,792	-	-	-	-	-	
1	대진리	1	임	598	598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	대진리	1-11	답	1	1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3	대진리	1-12	답	743	74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4	대진리	1-13	구	183	183	국(농림수산부)	-	-	-	-	
5	대진리	1-4	답	826	82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6	대진리	1-14	답	796	79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7	대진리	1-15	잡	1,847	1,84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8	대진리	1-16	답	650	650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9	대진리	1-8	답	8,582	8,58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0	대진리	4-1	대	1,224	1,22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1	대진리	4-2	창	383	38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2	대진리	4-3	대	188	188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3	대진리	산70-1 7	임	53,925	53,925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4	대진리	산70-2	임	593	59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5	대진리	산70-1 8	도	9,326	9,326	사천시	-	-	-	-	
16	대진리	산70-4	임	50,002	50,00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7	대진리	산70-5	임	1,147	1,14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18	대진리	산70-1 9	도	1,967	1,967	사천시	-	-	-	-	
19	대진리	산70-8	임	44,414	44,41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0	대진리	산71-2	임	10,397	10,397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공 부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소유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21	대진리	산71-3	도	4,940	4,940	사천시		-	-	-	
22	대진리	산71-4	임	20,266	20,26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3	대진리	산72-5	임	13,534	13,53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4	대진리	산72-2	임	1,185	1,185	국(기획재정부)	-	-	-	-	
25	대진리	산72-6	임	14,506	14,506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6	대진리	산73	임	2,083	2,083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7	대진리	산74	임	1,041	1,041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8	대진리	산74-4	임	1,864	1,864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29	대진리	산75-5	임	600	600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30	대진리	산75-1 2	임	102	102	교보자산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대진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 7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수도공급설비, 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사업
  - 나. 명 칭 :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86,533㎡(변경없음)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 1-5호선	L=949m, B=20m, A=28,693㎡	
	중로 2-18호선	L=199m, B=15m, A=3,250㎡	
주 차 장	주차장 1	A=1,960㎡	
	주차장 2	A=3,085㎡	
공 원	소공원 1	A=9,415㎡	
	소공원 2	A=780㎡	
녹 지	완충녹지 1	A=9,390㎡	
	완충녹지 2	A=25,770㎡	
수도공급시설	수도공급시설	A=1,120㎡	
우수지	우수지	A=2,815㎡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A=255㎡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ㄱ 당초: 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 대표 백영춘  
          ㄴ 변경: (수탁자)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나. 주 소 : ㄱ 당초: 사천시 곤양면 서삼로 37, 101호(미라벨 오피스텔)  
          ㄴ 변경: (수탁자)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2.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도로공사 시행(변경)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의 종류	일 반 도 로	노선번호 (노선명)	시도6호선 (곤양 서정 ~ 곤양 검정)
도로공사의 종류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 당초 : 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 대표자 백영춘 ○ 변경 - (수탁자)교보자산신탁(주) 대표이사 조혁중 - (위탁자)대진산업단지(주) 외 3개사 대표자 백영춘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곤양면 대진리 산70-1번지 ~ 산70-6번지 까지 (0.949km)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16. 1. 1. ~ 2022. 12. 31.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대진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기존 시도6호선(폭8m)의 도로가 이설 됨에 따라 폭원 20m로 연장 949m를 개설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6. 1. 1. ~ 2022. 12. 31.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사천시 공고 제2020-1578호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위기 극복과 항공우주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바.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71, FAX : 831-6044)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7.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그 밖에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및 시 출연금
2.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사업자의 경영 활동을 위한 융자지원
2. 사업자의 투자 및 설비 구축을 위한 융자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 계정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1. 당연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별표 1]

##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1.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중소기업 가.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C31311) 나.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C31312) 다. 항공기용부품 제조업(C31322)	
2. 지원범위	경상적 경비 가. 인건비, 사무실 및 공장 임대료, 보건안전관리비 등 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폐수처리비용 등 공공요금	
3. 지원방법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에 따른 지급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관 련 법 규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생략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가 해외 수주 시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3.25.>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 치 구 사 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b>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b>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 수요 파악 및 지원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b>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b> 8) <b>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b>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b>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b>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 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라 함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등 항공기사용자가 그 운항상의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항공기“라 함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골공기·비행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이하 “기기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이하 “소재류“라 한다)“라 함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15. 1. 28.>

제6조 삭제 <2015. 1. 28.>

제7조 삭제 <2015. 1. 28.>

제8조 삭제 <2015. 1. 28.>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1999. 2. 5.>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비행등의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여등) ①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 구성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③심의회 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심의회 의 안전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009. 4. 1.>

2. 삭제 <2009. 4. 1.>

⑤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1999. 1. 29.>

제17조의2 삭제 <2015. 1. 28.>

제18조 삭제 <1999. 2. 5.>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전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20조(검사수수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삭제 <1999. 2. 5.>

제24조 삭제 <1999. 2. 5.>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 사천시 공고 제2020-1590호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19. 4. 1. 봉명산 군립공원이 봉명산 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위원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135, FAX : 831-6032)



# 사 천 시 공 보

제 705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전부 개정)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관 련 법 규

### □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독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고, 독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독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해당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군립공원위원회·시립공원위원회·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부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 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① ~ ⑥ (생 략)

- ⑦ 위원장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국립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5조의2(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5조의3(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③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5호

## 사천시 공고 제2020-1597호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확대 마련으로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까지)
- 나. 시장의 책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사 천 시 공 보

제 705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 3313, FAX: 831- 6036)



# 사 천 시 공 보

제 705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05 호

[별지 제1호서식]

##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제7조제1항)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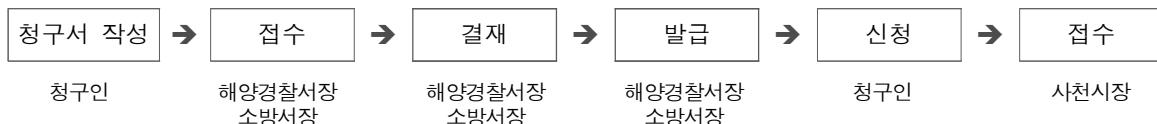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사 천 시 장 귀하

- |             |  |
|-------------|--|
| 청구인<br>제출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li> <li>3. 입금통장 사본</li> </ol> |
|-------------|--|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관 련 법 규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상구조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 (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은 구조대의 장은 구조상황을 수시로 관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 수난구호민간단체에게 소속 구조지원요원 및 선박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구조활동(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과 수난구호민간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생존자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중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7.>

④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⑥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3. 21.>

제39조(수난구호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1. 12.>

##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수당의 지급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 1. 출동수당

가. 활동비: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활동시간(활동시간은 입항·출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활동시간 8시간 이하: 기본수당

※ 기본수당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활동시간 8시간 초과 시: 기본수당 + 초과수당

※ 초과수당: 순경 계급의 시간외 근무 지급단가에 초과된 활동시간을 곱한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 나. 유류비

1) 지급기준: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 유류소모량: 인정유류소모량과 동원 선박이 제출한 유류소모량을 비교하여 적은 양으로 한다.

※ 유가: 어선의 경우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하고, 어선이 아닌 경우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BA유 또는 BB유의 경우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2) 인정유류소모량 산출기준

(가) 경유 및 BA유 (BB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 = 활동시간 × 마력 × 시간 · 마력당 소요량

※ 시간 · 마력당 소요량

구 분	시간 · 마력당 소요량
경유 사용선박	0.166리터/(시간 · 마력)
BA유(BB유) 사용선박	0.170리터/(시간 · 마력)

# 사 천 시 공 보

제705호

(나) 휘발유 사용선박

◆ 유류소모량(리터) = 활동시간 × 마력 × 0.33리터 / (시간 · 마력)

※ 정부지원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유류비 지급을 받는 경우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2. 교육 · 훈련수당

가. 동원수당: 대원별로 1일 1회에 한정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의 순경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동원실비: 운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의 구분 제2호에 따른다.